

식품 중 보리(*Hordeum vulgare*)와 쌀(*Oryza sativa*)에서
 부분적으로 가수분해된 단백질
 기준규격 변경

개정내용

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규정(EU) 2015/2283의 26조 (2)항에 따라, 보리(*Hordeum vulgare*)와 쌀(*Oryza sativa*)에서 부분적으로 가수분해된 단백질의 사용 조건의 변경을 포함하도록 개정함.

시행 규정(EU) 2017/2470의 부속서는 본 규정의 부속서에 따라 대체됨:

식품 유형	기준정보	비고
곡물 및 곡물 가공품	5g/100g	
아침식사용 시리얼	5g/100g	
조리 및 가공된 시리얼	30g/100g	
곡물 및 곡물 가공품	8g/100g	
수프 및 브로스	5g/100g, 50g/100g(건조 품목)	
소스	10g/100g, 50g/100g(건조 품목)	
기타 음료	8g/100ml	
음료	5g/100ml	
착향 음료	5g/100g	
음료베이스	90g/100g	

맥주 (무알코올)	5g/100ml	

시행일 : 2023. 12. 20

(유럽 연합 관보의 게재일 2023. 12. 20.로부터 20일째 되는 날 발효)